

제425회 임시회

'25. 4. 22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사유

○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충청북도의 책임 및 도민의 의무와 함께 건강관리 정책 추진 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건강정책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

4. 주요내용

-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-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건강정책 수립·시행 관련 도민 등의 의견수렴 사항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초고령사회 진입, ‘100세 시대’의 도래 등은 급격한 의료기술과 의약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‘건강관리’ 즉, 건강에 유익한 행위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구현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된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음

< 참고 1 >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-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그러나,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¹⁶⁾은 82.7세인데 반해, 건강수명¹⁷⁾은 70.4세로 기대수명과 약 12

16) 기대수명 :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.

17) 건강수명 :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.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함.

년의 격차가 존재하고,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‘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’하는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,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‘건강의 질’과 이에 대한 인식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

< 참고 2 >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관련 인식



* 자료 :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(Health Plan 2030, 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)

- 특히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에 따라 '02년부터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'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'이 제5차 종합계획(Health Plan 2030, 2021~2030)으로 수립·시행되면서,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대안으로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관리, 건강환경 조성과 함께 건강

증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, 금연·절주 등 건강 규제정책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맞는 정책 추진 기본틀을 마련하게 됨

< 참고 3 >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2021~2030) 기본틀



* 자료 :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(Health Plan 2030, 보건복지부·한국건강증진개발원)

- 이러한 정부의 사전적 예방과 건강관리 및 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만큼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지역보건법」 등에 따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발맞춰 충청도민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참여와 지자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책무 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

< 참고 4 > 타 시도 ‘건강관리’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시·도	조례명	제·개정일
1	서울	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	2025. 3. 27.
2	대구	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	2024. 5. 17.
3	제주	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	2025. 3. 19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
- －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○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(안 제2조)

- － 본 조례안에서는 ‘건강’을 ‘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’로 정하고, ‘건강권’은 「장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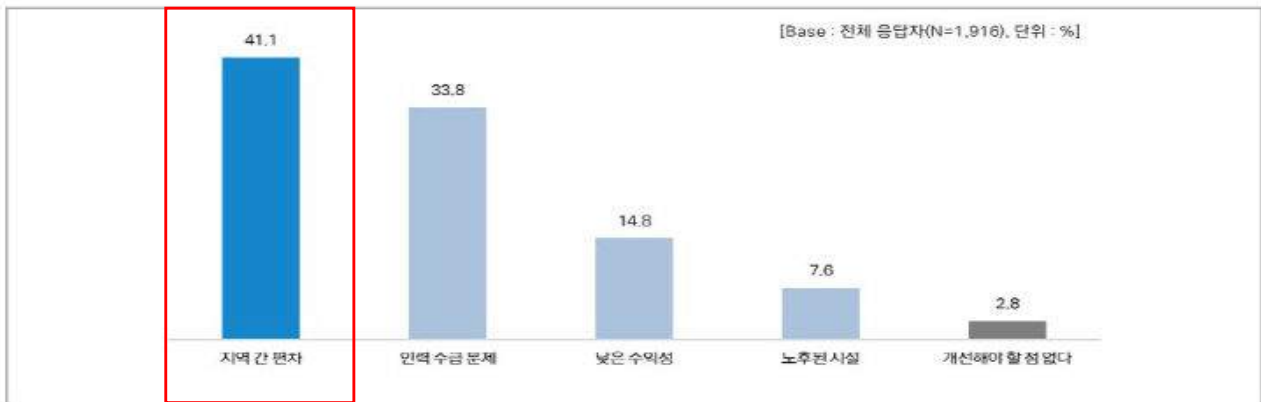
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‘건강권’으로 명시하였으며¹⁸⁾, ‘도민건강관리’는 충청도민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여 관련 시책 추진상 용어 사용에서 혼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

○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
- 본 조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“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도민 건강요구 파악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,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해야 한다”고 규정함
- 특히, 제2항에서 ‘도민의 건강요구 파악을 통해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고 명시한 것은 보건의료인프라의 시·군 간 격차*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 및 건강권 소외에 대한 인식 등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한 내용으로,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

* < 참고 5 > 충북 도내 공공보건의료 개선 과제

18) “건강권”이란 질병 예방, 치료 및 재활, 영양개선, 재활운동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,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


* 자료 : 충북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(충북도·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, '22. 8.)

○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함(안 제 4조)

－ 모든 도민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지며, 동등하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

－ 특히, 도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의 건강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도 명확히 함

이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의 기본 원칙¹⁹⁾ 중에 하나인 ‘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 보장’에 따라 일반 국민의 건강정책 의견 수렴 및 주도적 역할 부여가 건강증진정책의 최종 목표인 ‘건강수명 연장·건강형평성 제고’를 달성하기 위한

19)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2021~2030) 기본 원칙

- ①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
- ②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
- ③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
- ④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
- ⑤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 보장
- ⑥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

중요한 과제인 만큼 충청북도의 건강증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
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
권리 및 의무 조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

< 참고 6 >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및 성과목표



* 자료 :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(Health Plan 2030, 보건복지부 · 한국건강증진개발원)

-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·심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(안 제6조 ~ 제7조)
 - － 도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, ▲ 도민건강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▲ 성별·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및 건강 실태조사, 대책 ▲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 ▲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항 등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음
 - － 특히,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

지역보건의료계획²⁰⁾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도록 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을 함께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

< 참고 7 > 제8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(2023~2026) 전략체계



20)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추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- 이와 함께, 안 제7조에서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「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²¹⁾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지역의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도민 건강증진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

○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, 도민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도민 건강요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관련 통계·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~ 제10조)

-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시·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에서는 도민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인접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고,

21) 제2조(위원회 구성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지역주민 대표
2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학교보건 관계자
4. 산업안전·보건 관계자
5. 관계공무원

-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 및 건강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민건강관리 및 증진 관련 정책과 건강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였음

○ 중요한 건강 정책 수립·시행 시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1조)

- 이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8조에서 국민의 권리·의무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·시행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도민이 충청북도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인 점을 고려할 때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명시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됨

< 참고 8 > 보건의료기본법

제3조(국민의 참여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·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·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,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, 건강권

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이에,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